

	강의평가규정	문서번호	3-4-20		
		제정일	2018. 02. 26.		
		개정일	2022. 02. 18.		
		페이지	1/3	관리 부서	교무처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강의평가의 방법을 정하고 평가결과를 교원에게 제공하여 강의의 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① 강의평가는 당해학기 개설된 모든 강좌를 대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강의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교수가 직접 강의하지 않는 강좌
2. 타대학 개설 강좌
3. 과목 특성에 따라 총장이 정하는 강좌

제3조(평가자) 평가자는 당해 학기 개설된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모든 재학생으로 한다..

제4조(강의평가의 구분) 강의평가는 중간강의평가와 기말강의평가로 구분하여 매 학기 2회 실시하되 중간강의평가의 결과는 교원업적평가 및 각종지표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강의평가는 온라인통합지원시스템에 학생이 로그인하여 과목별로 평가하며 강의평가 참여학생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② 강의평가는 수강학생이 지정된 기간 내에 평가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기말강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성적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평가결과의 보고, 공개 및 활용) ① 교무처장은 매 학기 실시한 강의평가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강의평가 결과는 총장, 담당교수 개인과 교무처장,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공개한다.

③ 강의평가의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영하며, 강의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교원의 승진, (재)임용, 업적평가 등
2. 강사 재임용
3. 우수강의교원 포상
4. 강의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④ 해당 학기에 여러 교과목을 강의한 교수의 평균 강의평가점수는 교과목별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⑤ 강의평가 결과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해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교수학습연구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컨설팅, 교수법 특강)에 참여해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 강의평가 업무에 관여한 교직원들은 평가결과 활용 외에는 공개하거나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의평가규정	문서번호	3-4-20		
		제정일	2018. 02. 26.		
		개정일	2022. 02. 18.		
		페이지	2/3	관리 부서	교무처

제8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강의평가규정	문서번호	3-4-20		
		제정일	2018. 02. 26.		
		개정일	2022. 02. 18.		
		페이지	3/3	관리 부서	교무처

[별표]

강의평가 항목

1	교수님은 수업목표와 강의주제를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2	강의계획서(수업시간·일정)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었다.
3	강의내용은 명료하고 체계적이며 이해하기 적절한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4	교수님은 학생들의 강의내용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적절하게 유도하였다.
5	교수-학생 간 의사소통 및 질의응답이 원활히 이루어졌다.
6	사용된 교재 및 학습자료는 수업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7	시험 및 과제물은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8	출결관리가 잘 진행되었다.
9	휴강에 대한 사전공지 및 보강이 준수되었다.
10	전반적으로 강의가 만족스러웠다.